

음주정책통합지표 고찰 및 적용*

Evaluation of Alcohol Policies of OECD Countries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고는 Anderson & Lehto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25개의 개별 음주정책 지표를 사회환경, 가격, 개인, 시장, 생산, 유통 등으로 분류하여 음주정책 통합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30개 국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주류판매업소의 영업시간 및 일수, 거리 등의 유통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폐해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OECD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주 접근성에 관한 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세의 연간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1. 서언

음주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및 경제활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건강상의 영향을 보면, 음주는 간경변, 간암 등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고혈압 등의 질환을 발병하게 하며 또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정영호 외(2011)¹⁾ 연구에 따르면 음주에 기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조 1

천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음주관련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인력의 손실, 음주관련 사고 및 범죄, 음주로 인한 결근이나 업무 비효율성 등의 생산성손실, 가족해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인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비용(Cost Of Illness)이 20세 이상 총 질병비용 중 8.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환경오염 중 흡연(9.1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²⁾

* 본 고는 건강증진연구사업으로 수행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분석”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정영호 외(2011).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영호 외(2006).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증진지원단.

우리나라 국민의 월간음주율은 2007년에 남성과 여성이 각각 73.5%, 41.5%에서 2011년에는 77.6%, 44.2%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³⁾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24.9%, 여자 7.4%에 이르고 있다. 음주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 “파랑새플랜 2010”이라는 국가음주폐해감소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 바 있으나, 정책집행을 위한 후속 행정조치와 재원마련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⁴⁾

따라서, 음주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와 관련한 요인과 변수들이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주류에 대한 구입 제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 가격 및 조세, 광고 및 후원, 알코올 없는 환경 등이 포함된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음주 정책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음주정책지표를 고찰하고, OECD국

가를 중심으로 음주정책통합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음주정책의 현위치를 파악하고 향후의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음주정책 지표 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

각 국가들의 음주정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음주정책의 강도를 측정하여 순위를 매기는 연구는 1980년대 초에 Davies & Walsh(1983) “Alcohol problems and alcohol control in Europe”에서 시도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음주 정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여 유럽국가들의 음주정책 수준을 비교하였다. Davies & Walsh(1983)는 음주소비와 음주폐해,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음주정책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음주정책의 척도는 음주정책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축되었고(표 1

표 1. Davies & Walsh의 음주정책지표

구분	세부 지표	점수
생산 규제	1. 증류주(spirits) 생산 규제를 위한 국가 독점	1
	2. 와인 생산 규제를 위한 국가 독점	1
	3. 맥주 생산 규제를 위한 국가 독점	1
	4. 주류 제조 면허	1
	5. 독점수익일부의 음주예방 및 치료에 배분	1

3)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인용.

4) 파랑새플랜 2010 평가, 알코올사업지원단, 2010.

〈표 1〉 계속

구분	세부 지표	점수
유통 규제	6. 증류주(spirits)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1
	7. 와인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1
	8. 맥주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1
	9. 소매점 또는 식당에서의 시간 및 일수 규제	1
	10. 아울렛 수 규제	1
	11. 아울렛 위치 및 유형 규제	1
	12. 구매 및 소비에 대한 연령 규제(16세)	1
	13. 구매 및 소비에 대한 연령 규제(18세)	1
	14. 구매 및 소비에 대한 연령 규제(20세)	1
	15. 주류광고 규제: 자발적 규제	1
	16. 주류광고 규제: 법률적 규제	1
사회환경적 조치	17. 국가 음주예방관련 기관	1
	18. 국가 음주교육 프로그램	1
	19. 주류없는 환경에 대한 법규	1
	20.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수준	1
	2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50mg% 이하	1
	2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패널티-자동 면허중지	1
	23.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패널티-자동 구류	1
가격 및 재정적 조치	24. 와인에 대한 주세	1
	25. 맥주에 대한 주세	1
	26. 증류주에 대한 주세	1
	27. 와인 주세의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	1
	28. 증류주 주세의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	1
	29. 맥주 주세의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	1
	30. 주류 실질가격의 유지 또는 증가	1
계		30

자료: Davies & Walsh(1983)

참조), EC의 8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이후 1994년에 Italian Permanent Observatory on Youth and Alcohol에서는 Davies & Walsh(1983)에서 제시한 척도와 점수부여 방식을 거의 동일하게 활용하여 분석대상 국가를 18개 국가로 확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표 2 참조).

Karlsson & Osterberg(2001)는 Davies(1983)와 Italian Permanent Observatory on Youth and Alcohol(1994)의 음주정책지표 분석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 노르웨이가 음주정책지표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스웨덴, 폴란드, 영국

표 2. Italian Permanent Observatory의 음주정책지표

구분	세부 지표	점수
생산 규제	1. 증류주(spirits)에서의 국가 독점	1
	2. 와인에서의 국가 독점	1
	3. 맥주에서의 국가 독점	1
	4. 제조 면허	1
	5. 주류수익의 공공배분	1
유통 규제	6. 증류주(spirits)에서의 국가 전매	1
	7. 와인에서의 국가 전매	1
	8. 맥주에서의 국가 전매	1
	9. 영업 시간 및 일수 규제	1
	10. 판매점 수 규제	1
	11. 소매점 위치 및 유형 규제	1
	12. 최소 법적 연령 제한(16세)	1
	13. 최소 법적 연령 제한(18세)	1
	14. 최소 법적 연령 제한(20세)	1
	15. 주류광고 규제	1
	16. 산업계의 자발적 규제	1
사회적 조치	17. 국가 음주예방관련 기관	1
	18. 국가 음주교육 프로그램	1
	19. 금주를 촉진하는 법규	1
	20.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최대 0mg%	1
	2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최대 50mg%	1
	2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패널티-면허중지	1
	23.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패널티-구류	1
재정적 조치	24. 와인에 대한 주세	1
	25. 맥주에 대한 주세	1
	26. 증류주에 대한 주세	1
	27. 와인 주세의 연간 변동(annual variation)	1
	28. 증류주 주세의 연간 변동(annual variation)	1
	29. 맥주 주세의 연간 변동(annual variation)	1
	30. 국가의 가격통제	1
계		30

자료: Italian Permanent Observatory on Youth and Alcohol in Europe(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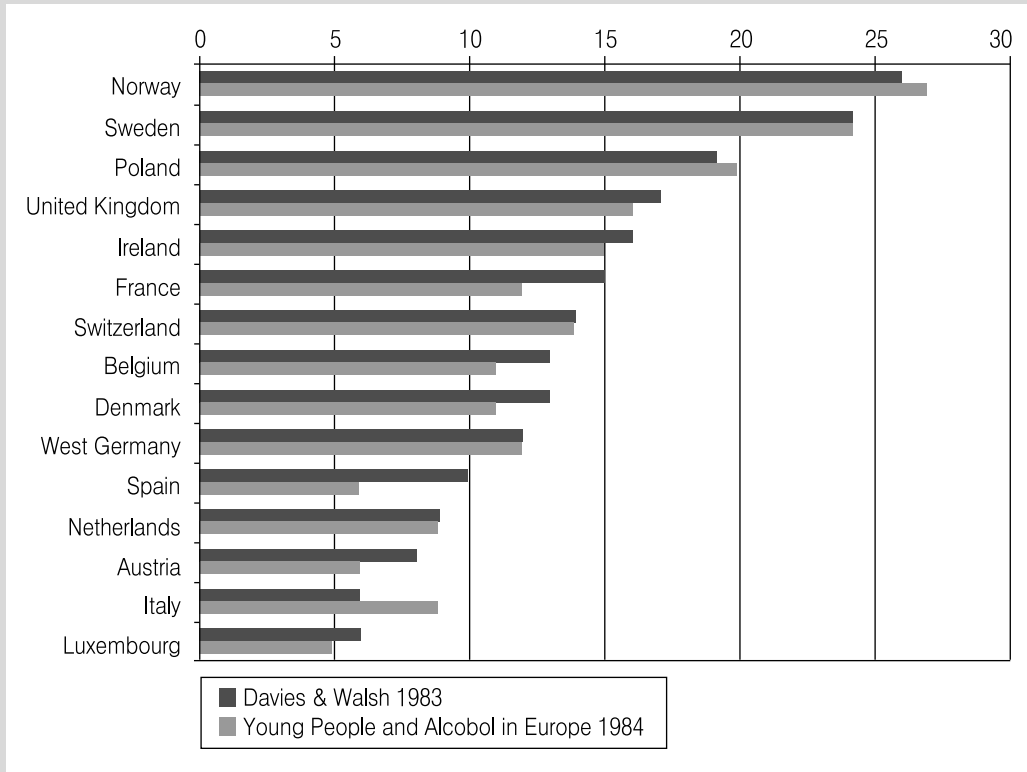
등의 순이었다(그림 1 참조).

Anderson & Lehto(1995)은 “Evaluation and

monitoring of action on alcohol”이라는 보고서

에서 Davies & Walsh(1983)의 척도에 7개의 항

그림 1. Davies(1983)와 Youth and Alcohol(1994)의 음주정책지표 비교



자료: Karlsson & Osterberg(2001)

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에는 무작위 음주측정, 주류의 경고문구, 주류의 최대 알코올 함유량 규제, 주류 광고규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음주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지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표 3 참조). 본 고에서는 음주정책의 국제비교를 위해 Anderson & Lehto(1995)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European Comparative Alcohol Study(ECAS, 2001) 프로젝트에서는 6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척도를 구축하여 음주정책의 강도와 포괄성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Davies & Walsh

(1983) 척도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문항을 수정·적용하였다. ECAS에서 척도를 도출하는 방식은 이전과는 다소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음주판매 연령제한이 20세로 되어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여부에 따라 0점 또는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16세의 연령제한에 더하여 18세의 연령제한에서 추가의 점수를 부여하고, 20세 연령제한에서 점수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여 제한규정의 강도를 반영하고 있다.

표 3. Anderson & Lehto의 음주정책지표

정책 항목	
1. 국가 음주예방관련 기관	20. 구매 및 소비 연령 제한(20세)
2. 국가 음주교육 프로그램	21. 주류 광고 제한: 자발적 규제
3. 알코올 없는 환경조성 관련 법규	22. 주류 광고 제한: 법적 규제
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수준	23. 주류 제조 면허
5.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50mg %이하	24. 증류주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6. 음주운전 패널티: 자동 면허중지	25. 와인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7. 음주운전 패널티: 자동 구류	26. 맥주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8. 와인 주세	27. 증류주 생산 국가 독점
9. 맥주 주세	28. 와인 생산 국가 독점
10. 증류주 주세	29. 맥주 생산 국가 독점
11. 와인 주세의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	30. 알코올관련 폐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독점 수익 일부의 배분
12. 맥주 주세의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	31. 무작위 음주 측정 빈도
13. 증류주 주세의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	32. 주류의 의무적 경고 문구
14. 주류의 실질가격 유지 또는 증가	33. 주류의 알코올 최대 함유량 제한
15. 소매점 및 식당, 주점에서의 영업시간 및 일수 제한	34. 공중파 TV 주류광고 금지
16. 아울렛 밀도 제한	35. 기타 대중매체의 주류광고 금지
17. 아울렛 위치 및 유형 제한	36. 생산 과정에서 효과적 규제
18. 구매 및 소비 연령 제한(16세)	37. 유통 과정에서 효과적 규제
19. 구매 및 소비 연령 제한(18세)	

자료: Anderson & Lehto(1995)

표 4. European Comparative Alcohol Study(ECAS)의 음주정책지표

구분	세부 지표	점수
생산 규제		(max=3point)
	1. 증류주(spirits) 생산 국가 독점	1
	와인 생산 국가 독점	1
	맥주 생산 국가 독점	1
	2. 국가독점생산은 없으나 제조면허 필요	1
유통 규제		(max=7point)
	3. 증류주(spirits)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1
	와인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1
	맥주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1
	4. 국가전매는 없으나 판매면허 필요	1
	5. 소매점에서의 시간 및 일수 규제	1

〈표 4〉 계속

구분	세부 지표	점수
유통 규제	6. 소매점에서의 시간 및 일수이외의 규제 (예, 주류판매점 수 제한, 주유소편의점에서 주류판매 금지)	1
	7. 주점, 식당에서의 시간 및 일수 규제	1
	8. 주점, 식당에서의 시간 및 일수이외의 규제 (예, 기숙사, 병원 등 특정장소에서 주류판매 금지)	1
개인 규제		(max=3point)
	9. 소매점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16세)	1/2
	소매점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18세)	1
	소매점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20세)	1 1/2
	10. 주점, 식당에서의 소비 연령 규제(16세)	1/2
	주점, 식당에서의 소비 연령 규제(18세)	1
	주점, 식당에서의 소비 연령 규제(20세)	1 1/2
마케팅 규제		(max=2point)
	11. 주류광고 규제: 법적 규제 주류광고 규제: 자발적 규제	2 1
사회환경적 조치		(max=3point)
	1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50mg% 이하	3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80mg% 이하	2
공공정책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제한있음	1
	13. 국가 음주예방프로그램 및 관련기관	1
계	14. 국가 음주교육프로그램 및 관련기관	1
		20

자료: European Comparative Alcohol Study(ECAS).

Eurocare(2006)⁵⁾의 2004~2006년의 프로젝트 일환인 Alcohol Policy Network에서는 Bridging the Gap(BtG) scale을 개발하였다. BtG scale은 ECAS 척도에 음주관련 조제를 포함하여 7개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BtG에서는 여러 형태의 음주정책이 미치는 효과가 각각 다르다는 측면을 반영

하기 위해 델파이(Delphi) 기법을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음주정책 그룹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14명의 전문가로부터 각각의 점수를 받고, 결과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가중치는 <표 5>와 같다.

5) EU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조직임.

표 5. 델파이기법을 적용한 세부영역별 가중치

음주정책 영역	포인트	점수 비중
1. 알코올 생산 규제	2	5.0%
2. 알코올 유통 규제	10	25.0%
3. 개인별 규제(연령제한)	4	10.0%
4. 마케팅 규제	3	7.5%
5. 사회환경적 규제(혈중알코올제한)	4	10.0%
6. 공공정책	1	2.5%
7. 주세	16	40.0
계	40	100%

자료: Bridging the Gap(2006).

표 6. BtG의 음주정책지표

구분	세부 지표	점수
생산 규제		(max=2point)
	증류주(spirits) 생산 국가 독점	1
	와인 생산 국가 독점	1/2
	맥주 생산 국가 독점	1/2
유통 규제		(max=10point)
	소매점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증류주(spirits)	2
	소매점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와인	1
	소매점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맥주	1
	소매점의 국가전매는 없으나 판매면허 필요: 증류주	1
	소매점의 국가전매는 없으나 판매면허 필요: 와인	1/2
	소매점의 국가전매는 없으나 판매면허 필요: 맥주	1/2
	소매점에서의 주류 판매일수 제한	1
	소매점에서의 주류 판매시간 제한	1
	소매점에서의 주류 판매에 대한 기타 제한 조치	1
	주점,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일수 제한	1
	주점,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시간 제한	1
	주점,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에 대한 기타 제한 조치	1
개인 규제		(max=4point)
	소매점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20세)	2
	소매점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18세)	1
	주점, 식당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20세)	2
	주점, 식당에서의 구입 연령 규제(18세)	1

〈표 6〉 계속

구분	세부 지표	점수
마케팅 규제		(max=3point)
	모든 주류 광고 및 후원 금지	3
	특정 주류 광고 및 후원 금지	2
	특정 주류 광고의 법적 규제	1
	특정 주류 광고 및 후원의 자발적 규제	1/2
사회환경적 조치		(max=4point)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50mg% 미만	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50mg%	2
공공정책	국가 음주예방 또는 교육프로그램	(max=1point) 1
조세정책		(max=16point)
	강한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44.01유로 이상	4
	강한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2.01~44	3
	강한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11.01~22	2
	강한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6~11	1
	중간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0.01유로 이상	4
	중간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10.01~20	3
	중간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01~10	2
	중간 주류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75~5	1
	와인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14.97유로 이상	4
	와인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7.49~14.96	3
	와인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3.75~7.48	2
	와인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05~3.74	1
	맥주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14.97유로 이상	4
	맥주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7.49~14.96	3
	맥주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3.75~7.48	2
	맥주의 100% 알코올리터당 물품세: 2.05~3.74	1

자료: Eruocare Bridging the gap project(2006). Scaling alcohol control policies across europe.

Brand et al.(2007)은 WHO의 Global Alcohol database: Regional office for europe를 활용하여 OECD 30개 국가의 음주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각 국가들의 음주정책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통합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통합지

표를 도출하기 위한 영역으로 주류의 물리적 가용성, 절주 프로그램, 주류 가격, 주류광고, 음주운전 규제의 다섯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주정책이 강한 국가일수록 음주소비량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표 7. Brand의 음주정책지표

영역	Rating	지표	정책
물리적 가용성 (32점)	☆☆☆	법적 주류구매 연령	16, 17, 18, 19, 20+
	☆☆☆	주유소편의점 주류판매로 인한 손실발생시 판매자 책임	No, Yes
	☆☆	소매점 판매 주류 유형 제한	없음; 부분 정부전매; 완전 정부전매
	☆☆	주류 소매점의 밀도 제한	없음; 와인만; 와인 & 증류주; 와인 & 증류주 & 맥주
	☆☆	주류 판매 영업시간 또는 일수 제한	없음; 시간 또는 일수; 시간 & 일수 제한
절주프로그램 (8점)	☆☆	음주폐해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이동형 프로그램	No, Yes
	☆	공격성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알코올 제공자의 의무훈련교육	No, Yes
주류가격 (24점)	☆☆☆	맥주 가격지수	0-0.29; 0.3-0.59; 0.6-0.89; 0.9+
	☆☆☆	와인 가격지수	0-0.9; 1.0-1.9; 2.0-2.9; 3.0+
	☆☆☆	증류주 가격지수	0-2.9; 3.0-5.9; 6.0-8.9; 9.0+
주류광고(3점)	☆	인쇄물, TV/라디오, 옥외광고에서의 광고제한 수	0, 1, 2, 3
음주운전 (34점)	☆☆☆	무작위 음주측정	하지않음; 매우가끔; 가끔; 자주; 매우자주
	☆☆☆	혈중알코올제한: 성인	0.08+, 0.03-0.07, 0-0.02
	☆☆☆	혈중알코올제한: 청소년	0.04+, 0.02-0.03, 0-0.01
	☆☆	초과혈중알코올에 대한 패널티	벌금, 면허정지
	☆☆	청소년 운전자의 graduated licensing	No, Yes

주: ☆ 효과가 제한적, ☆☆ 효과있음, ☆☆☆ 매우 효과있음

자료: Brand, Saisana, Rynn et al(2007). Comparative analysis of alcohol control policies in 30 countries, PLoS Medicine, 4(2).

3. 음주정책 통합지표 분석

1) 분석모형 및 자료원

본 고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문헌 중 Anderson & Lehto의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음주정책 통합지표를 산출하였다(앞의 표 3 참조). 이를 위하여 WHO에서 제시하는 WHO의 데이터베이스⁶⁾를 활용하였으나, OECD의 모든 국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없었던 국가는 제외하고 30개의 OECD국가를 본 분석

6) WHO(2011)는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음주소비와 건강 수준에 대한 각 국가들의 현황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음주와 관련된 지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라는 사이트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에 포함하였다. 또한, Anderson & Lehto에서는 37개의 음주정책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의 제한점으로 특정 변수는 포함하지 못하였고 총 25개의 지표를 포함하여 통합지표를 산출하

였다(표 8 참조). 음주정책통합지표는 생산, 유통, 개인, 시장, 사회, 가격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지표에는 특정한 가중치 없이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8. 음주정책지표 포함 범위: Anderson & Lehto 방식 적용

	정책 항목	점수	포함
사회환경	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수준	1	○
	5.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50mg %이하	1	○
	6. 음주운전 패널티: 자동 면허중지	1	○
	31. 무작위 음주 측정 빈도	1	○
	7. 음주운전 패널티: 자동 구류	1	×
가격	8. 와인 주세	1	○
	9. 맥주 주세	1	○
	10. 증류주 주세	1	○
	11. 와인 주세의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	1	×
	12. 맥주 주세의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	1	×
	13. 증류주 주세의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	1	×
	14. 주류의 실질가격 유지 또는 증가	1	○
개인	18. 구매 및 소비 연령 제한(16세)	1	○
	19. 구매 및 소비 연령 제한(18세)	1	○
	20. 구매 및 소비 연령 제한(20세)	1	○
시장	21. 주류 광고 제한: 자발적 규제	1	○
	22. 주류 광고 제한: 법적 규제	1	○
	34. 공중파 TV 주류광고 금지	1	○
	35. 기타 대중매체의 주류광고 금지	1	○
생산	23. 주류 제조 면허	1	○
	27. 증류주 생산 국가 독점	1	○
	28. 와인 생산 국가 독점	1	○
	29. 맥주 생산 국가 독점	1	○
유통	15. 소매점 및 식당, 주점에서의 영업시간 및 일수 제한	1	○
	16. 아울렛 밀도 제한	1	○
	17. 아울렛 위치 및 유형 제한	1	○
	24. 증류주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1	○
	25. 와인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1	○
	26. 맥주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1	○

〈표 8〉 계속

정책 항목		점수	포함
	30. 알코올관련 폐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독점 수익 일부의 배분	1	×
	1. 국가 음주예방관련 기관	1	×
	2. 국가 음주교육 프로그램	1	×
	3. 알코올 없는 환경조성 관련 법규	1	×
	32. 주류의 의무적 경고 문구	1	×
	33. 주류의 알코올 최대 함유량 제한	1	×
	36. 생산 과정에서의 효과적 규제	1	×
	37. 유통 과정에서의 효과적 규제	1	×
계(MAX)		37	26

자료: Anderson & Lehto(1995).

〈표 9〉는 본 연구에서 산출한 OECD 국가의 음주정책통합지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OECD 국가 중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웨덴, 아이슬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위의 순위에 놓여 있는데, 주류 유통과 관련된 음주정책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고에서는 Anderson & Lehto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음주 정책지표를 산출하여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25개의 개별 음주 정책 지표를 사회환경, 가격, 개인, 시장, 생산, 유통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개별 지표를 단순합산하는 방식으로 통합지표가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음주정책 통합지표에서 분석 대상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15위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스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벨기에, 오스트리아 순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영역에서 1점 만점에 1점, 유통은 6점 만점 중 0점, 개인 3점 만점에 2점, 시장 4점 만점에 3점, 사회 3점 만점에 2점, 그리고 가격은 4점 만점에 3점으로 총 11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유통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유통관련 지표에는 식당 및 주점의 영업 시간 및 일수 제한, 아울렛 밀도 · 위치 · 유형 제한, 증류주 · 와인 · 맥주 유통에서의 국가 전매 등이 포함된다. 즉, 주류 판매업소의 영업시간 및 일수, 거리 등의 제한조치가 OECD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가격정책 지표 중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와인 · 맥주 · 증류주 주세의 연간 조정 지표들을 포함하여 분석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

표 9. Anderson & Lehto 방식 적용한 음주정책통합지표 분석결과

순위	국가	통합지표	생산	유통	개인	시장	사회	가격
1	Finland	20	1	6	3	4	3	3
1	Norway	20	1	5	3	4	3	4
3	Sweden	19	1	5	3	4	3	3
4	Iceland	18	1	5	3	4	2	3
5	France	14	1	1	2	4	3	3
5	Netherlands	14	1	2	2	2	4	3
5	Poland	14	1	1	2	4	3	3
5	Slovenia	14	0	2	2	4	3	3
5	Turkey	14	1	1	2	4	2	4
10	Australia	13	1	0	2	4	3	3
10	Ireland	13	1	3	2	3	1	3
10	Spain	13	0	2	1	4	4	2
13	Switzerland	12	1	0	2	4	2	3
13	US	12	1	3	3	2	2	1
15	Germany	11	0	0	2	3	3	3
15	Hungary	11	0	1	2	4	2	2
15	Japan	11	1	0	3	2	2	3
15	Korea	11	1	0	2	3	2	3
15	NewZealand	11	0	2	2	2	2	3
20	Canada	10	0	0	2	2	2	4
20	Czech	10	1	1	2	0	2	4
20	Denmark	10	0	1	1	3	2	3
20	Italy	10	1	1	1	2	2	3
20	Slovakia	10	1	0	2	2	2	3
20	UK	10	0	2	2	2	1	3
26	Austria	9	0	0	1	2	3	3
27	Belgium	8	1	0	2	0	2	3
27	Portugal	8	1	0	1	2	2	2
29	Luxembourg	7	1	1	1	2	1	1
30	Greece	6	1	0	1	0	4	0

나라에는 주세의 연간조정 메카니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의 폐해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OECD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주 접근성에 관한 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가격

정책과 함께 비용효과적인 가격정책을 수반해서 음주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함께, 재정적 지원, 자기규제, 캠페인참여 등 주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헌